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 거 법 조 문	과태료 금 액
가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	법 제28조제2항제1호	100만원
나.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	50만원
다.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2항제2호	40만원
라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1호	200만원
마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·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제2항제3호	30만원

바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	법 제28조제1항제2호	400만원
사.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28조제3항제1호	30만원
아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8조제2항제1호의3	100만원
자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28조제3항제2호	50만원